



## 2020학년도 겨울방학 코로나19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1년 1월 3일 24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은 붙임의 파일1,2를 참고하세요.)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연말연시 각종 모임, 방학동안의 여행 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혹시라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붙임 파일 3,4를 꼭 참고하시고, 코로나블루를 극복합시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겨울방학동안 가정 내에서 자녀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올바른 수칙으로 지켜주세요!**

- ① 가급적 외출은 최소한으로!  
(카페, 식당, 공원에서 친구들과 음식 나눠먹기 모두X)
- ②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 ③ 수시로 손 씻기! 손을 못 씻는 경우에는 손소독제 사용하기!
- ④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 ⑤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꼭 알리기!**
- ⑥ 음성결과이더라도 아프면 집에서 쉬기!
- ⑦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개학 7일 전 (1월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손만 잘 씻어도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신종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장관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플루엔자</li> <li>•감기</li> <li>•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감염증</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티푸스</li> <li>•A형간염</li> <li>•장출혈대장균감염증</li> <li>•세균성이질</li> <li>•</li> <li>•</li> </ul>

※ 올바른 방법으로 씻지 않으면 손을 씻어도 상당수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남아있어요!



※ 손바닥, 손가락사이, 손톱 밑 등 구석구석 깨끗한 손씻기를 실천해요!



\*이미지 출처: 질병관리청

- 참고1)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 참고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FAQ
- 참고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 참고4)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2020. 12. 30.  
전주제일고등학교장

# 참고 1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일반 방역수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li> <li>-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li> <li>*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li> <li>-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li> <li>*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li> <li>-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li> <li>■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li>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li> <li>■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li> <li>■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li> <li>-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li> <li>■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ul>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랜차이즈형 카페*</li> <li>*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li> <li>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li> <li>② 직영점 형태 포함</li> <li>■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li> <li>■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li> <li>*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li> <li>■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li> <li>▶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li> <li>&lt;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gt;</li> <li>▶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li> <li>▶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li> <li>▶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li> <li>▶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li> <li>&lt;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gt;</li> <li>▶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li> <li>▶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li> <li>▶ 마스크 착용</li> </ul>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li> <li>-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li> <li>-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응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li> <li>*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li> <li>■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li> <li>&lt;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gt;</li> <li>▶ <u>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u></li> <li>-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li> <li>* <u>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u></li> <li>▶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li> <li>▶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li> <li>&lt;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li>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li> <li>▶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li> <li>&lt;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li> <li>▶ 식사를 대응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li> <li>-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li> <li>▶ 식사 대응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li> <li>&lt;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gt;</li> <li>▶ <u>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u></li> <li>*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예외 허용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li> <li>&lt;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li>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li> <li>▶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li> <li>&lt;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gt;</li> <li>▶ 식사를 대응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에만 매장 내 취식 가능</li> <li>-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li> <li>▶ 식사 대응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li> </ul>

## 참고 2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관련 FAQ

###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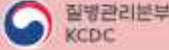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 Q4.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


2020.3.2



#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체온도일회 측정기 300만원 이하의 보급이 가능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자가치료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격리해제일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모니터링 방법**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2회 이상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서식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권태감
✔ 인후통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폐렴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80초(일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